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72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엄태영 · 안철수 · 김상훈
김태호 · 윤한홍 · 이종배
박충권 · 박성민 · 이만희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경우 불법 개조,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음.

이에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

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등”을 “방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 등”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u>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u>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p> <p>-----</p> <p>-----.</p> <p><u>1.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u>2.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1호에</u>-----</p> <p>-----</p> <p>-----</p> <p>-----</p> <p>-----</p> <p>-----.</p> <p>④ -----</p> <p><u>방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 등</u>-----</p>

